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산업경제위원회
2000. 3. 14.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00년 2월 29일

· 회부일자 : 2000년 2월 29일

다. 상정 일자

○ 제171회 임시회

·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2000. 3. 14) 상정, 질의답변, 의결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
률시행령 제51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0지방중소기
업육성자금운용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개정함

나. 주요 골자

- 용어의 정의 : 사업명 변경에 따라 용어 정의 추가 및 관계법령개정에 따른 조문정리

(안 제2조 제1호, 제6호, 제7호, 제11호, 제12호)

- 추가 :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 지역특화사업
- 조문정리 : “중소기업”을 “중소기업자”로, 아파트형공장건설자의 관련조항 개정에 따라 “제29조제2항”을 “제28조의2의제1항”으로, “시장개발사업자”를 “시장재개발사업자”로 하고,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을 삭제함

- 기금의 관리·운용 등 (안 제5조제2항)

- “중소기업시설개체(구조조정)지원자금, 중소기업 임지지원자금,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지원자금”을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 지원자금”으로 통합 관리·운용
- “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 지원자금” 신설
- “중소유통구조개선지원자금”을 “시장재개발사업지원자금”으로 개정

- 기금의 지원대상자 (안 제6조제1항제1호, 제5호)

- “충청북도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를 “충청북도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자”로 함
- “시장개발사업자”를 “시장재개발사업자”로 함

- 기금의 사용 등 (안 제9조제1항 내지 제4항)
 - 시달된 지원대상사업의 내용에 맞추어 개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유해영)

-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한 2000년도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운영지침에 맞도록 개정하는 조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 생 략 ”

6. 심 사 결 과 : “ 원안 가결 ”

7. 소 수 의 견 요 지 : “ 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 “ 없 음 ”

9. 별 첨

◎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 충청북도지사 제출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7호,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6호중 “제29조제2항”을 “제28조의2의제1항”으로 하며,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중소기업자”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관련조합 및 단체를 말한다.
7. “시장재개발사업자”라 함은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 특별조치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을 현대화하기 위하여 재개발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1.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새로이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것과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자동화·정보화·기술개발·사업전환·협동화·물류현대화 등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을 말한다.
12. “지역특화산업”이라 함은 지역경제의 여건에 비추어 자원·기술·인력 등에서 현실적, 잠재적인 비교우위가 높은 중소기업업종으로서 도지사가 선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기금은 다음 각호의 자금으로 구분하여 운용한다.

1.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 지원자금
2. 시장 재개발사업 지원자금
3. 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 지원자금
4.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지원자금
5.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자금

제6조제1항제1호,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충청북도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자
5. 시장재개발사업자

제9조제1항 내지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4항을 삭제한다.

①기금중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 지원자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1. 공장 또는 사업장건립을 위한 부지매입비 및 건축비 지원사업
2. 아파트형공장 등 임대공장 또는 사업장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3. 기계기구등 생산(서비스)시설의 신규구매 및 개체소요자금
4. 시장·전문상가·점포시설개선 및 전문상가·공동창고 건립자금
5. 경쟁력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소요자금 지원사업
6. 시설투자와 관련하여 소요되는 연계 운전자금 지원사업
7. 원부자재 구입비 등 기업 경영을 위해 소요되는 운전자금 지원사업
8. 기타 중소기업창업 및 경쟁력강화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기금중 시장제개발사업 지원자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1.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과 그 부속시설에 대한 건축·기반공사비와 설비비 및 필요경비 지원사업
2. 임시시장 설치를 위한 부지 또는 기존 건물임차비 지원사업
3. 기타 시장 제개발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기금중 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 지원자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1. 기업 및 조합이 아닌 공공단체 또는 중소기업 종업원 등에 대한 대출 사업
2. 도지사가 직접 수행하는 중소기업 지원 사업비로서 집행사업
3. 도지사가 민간단체에 위탁 수행하는 중소기업지원사업비로 출연 또는 보조사업
4. 중소기업 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단체의 중소기업 지원 사업비 또는 운영비로서 출연 또는 보조사업
5. 기타 지역특화산업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융자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받은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융자받은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p> <p>1.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p> <p>2~5.(생략)</p> <p>6.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제2항의.....</p> <p>7. “시장개발사업자”라 함은 기존재래시장 등의 건축물을 철거 또는 중·개축하여 현대식 시장으로 재개발하는 사업자를 말한다.</p> <p>8.~10.(생략)</p> <p>11.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이라 함은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p> <p>12.(신설)</p> <p>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등)</p> <p>① (생략)</p> <p>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자금으로 구분 운용한다.</p> <p>1. 중소기업 시설개체(구조조정)지원금</p> <p>2. 중소기업입지 지원자금</p> <p>3. 중소기업통업구조개선 지원자금</p>	<p>제2조(정의).....</p> <p>1. “중소기업자”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관련조합 및 단체를 말한다.</p> <p>2~5.(현행과 같음)</p> <p>6.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2의제1항의.....</p> <p>7. “시장재개발사업자”라 함은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을 현대화하기 위하여 재개발하는 사업자를 말한다.</p> <p>8.~10.(현행과 같음)</p> <p>11. “창업및경쟁력강화사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새로이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것과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자동화·정보화·기술개발·사업전환·협동화·플류현대화 등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을 말한다.</p> <p>12. “지역특화산업”이라 함은 지역경제의 여건에 비추어 자원·기술·인력 등에서 현실적, 잠재적인 비교우위가 높은 중소기업 업종으로서 도지사가 선정하는 산업을 말한다.</p> <p>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등)</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자금으로 구분 운용한다.</p> <p>1.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 지원자금</p> <p>2. 시장재개발사업 지원자금</p> <p>3. 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 지원자금</p>

현 행	개 정 안
<p>4.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원자금 5.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지원자금 6. 중소기업경영안정 지원자금</p>	<p>4.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지원자금 5.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자금</p>
<p>제6조(기금의 지원대상자)</p>	<p>제6조(기금의 지원대상자)</p>
<p>①..... 1. 충청북도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2.~4. (생략) 5. 시장개발사업자 6.~8. (생략)</p>	<p>①..... 1. 충청북도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자 2.~4. (현행과 같음) 5.시장재개발사업자 6.~8. (현행과 같음)</p>
<p>제9조(기금의 사용등) ① 기금중 중소기업시 설개체(구조조정) 지원자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p>	<p>제9조(기금의 사용등) ①기금중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 지원자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p>
<p>1.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내지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화지원사업, 정보화지원사업, 기술개발지원사업, 사업전환지원사업 등 중소기업 구조 고도화 사업 2. 중소기업의 사업 영역 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대기업 협력사업 3.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 한 창업자에 대한 지원사업 4. 지역특화산업관련 협동조합, 사업자 단 체, 법인 등이 공동경영여건개선사업 및 조직화에 참여하는 기업의 공장설립, 시 설투자 및 경영안정사업 5. 기타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 또는 구조 개선지원계획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사업</p>	<p>1. 공장또는 사업장 건립을 위한 부지매 입비 및 건축비 지원사업 2. 아파트형공장 등 임대공장 또는 사업 장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3. 기계기구 등 생산(서비스)시설의 신규 구매 및 개체소요자금 4. 시장·전문상가·점포시설개선 및 전문상가·공동창고 건립자금 5. 경쟁력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소요자금 지원사업 6. 시설투자와 관련하여 소요되는 연계 운전자금 지원사업 7. 원부자재 구입비 등 기업경영을 위해 소요되는 운전자금 지원사업 8. 기타 중소기업창업 및 경쟁력강화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p>
<p>②기금중 중소기업입지 지원자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p>	<p>②기금중 시장재개발사업 지원자금은 다 른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p>

현행	개정안
<p>1. <u>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지임대사업</u></p> <p>2. <u>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시장·군수의 설립 승인을 받은 민간 사업자의 아파트형 공장 건설사업</u></p> <p>3. <u>기타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 또는 구조 개선지원계획에 의한 입지지원사업</u></p> <p>③기금중 <u>중소유통업구조개선 지원자금</u>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p> <p>1. <u>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 재개발사업</u></p> <p>2. <u>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체인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점포시설 현대화 사업 및 공동창고 건립사업(개정 99. 7. 30)</u></p> <p>3. <u>상점가진중조합원의 점포시설 현대화 사업 및 공동창고 건립사업</u></p> <p>4. <u>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상업협동조합원의 점포시설 현대화사업 및 공동창고 건립사업</u></p> <p>5. <u>기타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 또는 구조개선 지원계획에 의한 중소기업유통업의 구조 개선사업</u></p> <p>④기금중 <u>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원자금</u>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위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p> <p>1. <u>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입주기업의 공장부지 매입 및 공장건설 사업</u></p> <p>2. <u>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입주기업의 시설 투자 및 경영안정사업</u></p> <p>3. <u>기타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에 의한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활성화 지원사업</u></p>	<p>1. <u>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과 그 부속시설에 대한 건축·기반공사비와 설비비 및 필요경비 지원사업</u></p> <p>2. <u>임시시장 설치를 위한 부지 또는 기존 건물임차비 지원사업</u></p> <p>3. <u>기타 시장재개발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u></p> <p>③기금중 <u>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 지원자금</u>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p> <p>1. <u>기업 및 조합이 아닌 공공단체 또는 중소기업중업원 등에 대한 대출사업</u></p> <p>2. <u>도지사가 직접 수행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비로서 집행사업</u></p> <p>3. <u>도지사가 민간단체에 위탁수행하는 중소기업지원사업비로 출연 또는 보조사업</u></p> <p>4. <u>중소기업지원기능을 수행하는 단체의 중소기업지원사업비 또는 운영비로서 출연 또는 보조사업</u></p> <p>5. <u>기타 지역특화산업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u></p> <p>④(삭제)</p>

관계법령(拔萃)

□ 지역균형개발및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3조(육성계획의 추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육성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한 지방중소기업육성 관련기금의 설치 또는 동 기금의 활용
2. 지방재정법 및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지방채의 발행 및 지방세의 징수유예

제44조(육성계획에 대한 지원) ①정부는 시·도지사가 육성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4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

□ 지역균형개발및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51조(육성계획의 추진) ①~②(생략)

③중소기업청장은 지방중소기업육성 관련기금의 조성을 지원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상사업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규모 또는 일정비율이상의 지방재정을 확보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④중소기업청장은 시·도지사가 정부의 지원금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자를 위한 융자금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출에 관한 금리·기간·조건 등에 관한 지침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2(아파트형공장의 설립 등) ①제13조·제13조의2·제13조의3·제13조의4·제13조의5·제14조·제14조의2·제14조의3·제14조의4 및 제18조의 규정은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승인, 인·허가 등의 의제, 설립 등의 승인에 대한 특례, 처리기준의 고시등, 설립등의 승인 취소, 건축허가, 사용승인, 제조시설 설치승인 제조설치승인의 취소 및 협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④ (생략)

제29조 삭제 <99.2.8>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업종의 특성과 상시근로자수, 재산규모, 매출액 등을 참작하여 그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하이고 그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하"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②중소기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기업과 중기업으로 구분한다.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이를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외의 기업과의 합병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기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 기타 법인·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5조(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구역의 추천 및 선정) ①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재개발사업 시행구역 및 시장재건축사업 시행구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장으로 한다. 다만, 당해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도시재개발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사업 시행인가를 받았거나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나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시장을 제외한다.

1. 건축물의 노후화와 편의시설등의 부족으로 경쟁력을 상실하여 재개발·재건축이 시급한 시장
2. 인구 또는 산업등의 집중으로 건축물 및 시설의 확장이 시급한 시장
3. 화재 또는 수해등으로 재개발·재건축이 시급한 시장
4. 건축물의 안전상의 문제로 재개발·재건축이 시급한 시장
5. 그 밖에 유통산업의 개방등으로 재개발·재건축이 시급하다고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시장

②제1항의 경우에 시장의 주위여건 및 토지이용의 효율화를 위하여 당해 시장의 인근구역을 시장구역에 합병하여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인근구역의 토지 및 건축물등의 소유자 전원이 당해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의 시행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장에 그 인근구역을 포함한 구역을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구역으로 할 수 있다.

③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구역을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추천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를 거쳐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장의 명칭, 소재지, 시장부지의 지번 및 면적, 건물 연면적, 영업장 면적등 시장현황을 기재한 서류
2.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3. 구역의 지번 및 면적과 토지소유자등의 동의관계서류(인근구역을 시장재개발 사업 시행구역 또는 시장재건축사업 시행구역에 포함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시장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 시행계획의 개요

5.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서류

④ 중소기업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구역 선정의 추천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그 선정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를 거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 시행구역을 선정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시장명 및 시장대표자의 성명·주소
2. 시장재개발사업 또는 시장재건축사업의 구분
3.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구역의 지번 및 면적
4.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계획의 개요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구역이 선정된 후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당해 구역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장에게 변경사유 및 관계자료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를 거쳐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구역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항의 규정은 시장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 시행구역의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97.5.24>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창업”이라 함은 새로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7.(생략)

□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자”라 함은 다음 명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
 - 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 다.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중 대통령이 정하는 것
 - 라.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진흥을 위한 단체
2. “중소기업의 자동화”라 함은 중소기업자가 생산성 및 품질 향상을 위하여 각종 자동화 설립를 통하여 생산공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3. “중소기업의 정보화”라 함은 중소기업자가 컴퓨터 또는 각종 제어장치를 이용하여 경영관리 및 유통관리를 전산화하는 등 중소기업의 전산망을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4. “기술개발”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중소기업자가 생산·판매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을 행하는 것
 - 나. 가목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의 성과를 이용하는 것
5. “사업전환”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중소기업자가 영위하고 있는 업종의 사업을 폐지하고 새로운 업종의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
 - 나. 중소기업자가 영위하고 있는 업종의 사업을 축소하고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추가하는 경우로서 추가되는 업종이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활동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게 되는 것
6. “협동화”라 함은 다수의 중소기업자가 행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공장등 사업장을 하는 집단화하는 것
 - 나. 생산설비·연구개발설비·환경오염방지시설 등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것

다. 제품·상표의 개발, 원자재 구입·판매등 영업활동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

7. “물류현대화”라 함은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제품의 원활한 유통을 도모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유통시설을 설치 또는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기타참고자료

2000년도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운용지침

2000년도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운용지침

1999. 12

중소기업정책국
소 기 업 과

1. 운용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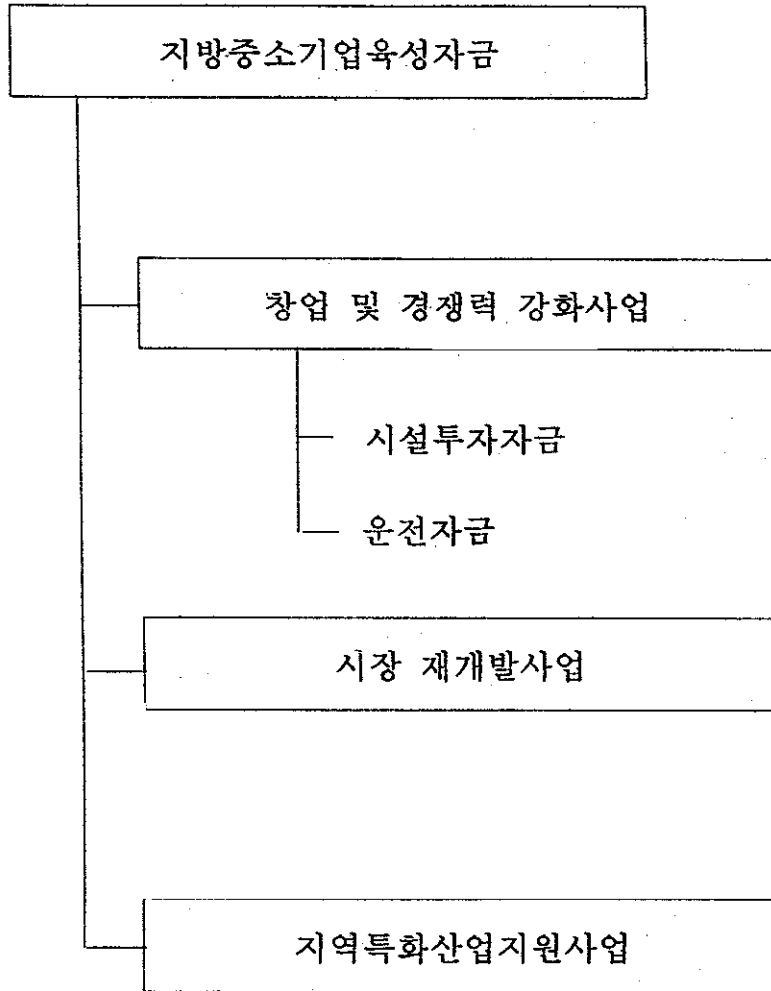
-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51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청장은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의 지원대상, 대출에 관한 금리·기간·조건 등에 관한 포괄적 운용지침을 수립·시달

- 시·도는 동 지침 범위내에서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자금을 운용
 - 자금지원대상업종, 지원기준, 대출추천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체규정 제정시행

 - 매년초에 당해연도 자금지원 계획을 공고

 - 시·도가 2000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의 운용지침과 상이한 자체규정을 제정하거나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장과 사전협의

2. 지원사업의 구분 및 체계도



3. 사업별 자금 운용지침

창업 및 경쟁력강화 지원사업

가.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 관련 조합 및 단체

□ 기본지원업종

○ 제조업

- 제조업 전업률이 30%이상으로 공장등록을 한 기업
-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는 소기업
 - ※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포함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으로서 공장설립 인·허가를 받은 기업 및 유희공장을 매입하려는 기업

○ 유통업

- 유통업자
(한국표준산업분류중 도·소매업 및 상품중개업에 한함)
- 시장, 중소백화점·쇼핑센터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

○ 건설업

- 아파트형공장 건설사업자
 - ※ 기타 건설업 지원은 시·도지사가 별도로 정하여 지원가능

□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기타 업종

- 시·도지사가 산업분포,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의 재원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하는 업종
 - 업종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원칙으로 지정
 - 매년초 지원대상업종을 자금지원계획에 포함하여 공고

나. 지원제외기업

□ 기본방향

- 2000년부터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에 대하여는 정책 자금 지원을 제한
- 중소기업의 재무구조개선을 적극적으로 유도

□ 지원제한 기준 및 적용방법

- 융자신청기업의 부채비율이 업종별 부채비율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다만, 부채비율이 과다하게 높은 업종은 전 업종 평균 부채비율의 3배를 초과시 제외
 - 부채비율이 낮은 업종의 경우 전 업종 평균 부채비율을 초과시 제외

※ 전업종 평균 부채비율은 337%임

○ 지원제한 부채비율

- 위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청에서 산정한 <붙임> 업종별 지원제한 부채비율표에 따라 지원제외 여부를 심사

※ 신청기업의 부채비율이 해당 업종의 제한부채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업종별 지원 제한부채비율(표) : 붙임참조

○ 기업 부채비율 산정

- 신청일 현재 부채비율

※ 신청기업의 직전 사업년도말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되, 사업년도말 이후 신청일까지 자본 및 부채의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

당해 신청 자금분은 부채비율산정에서 제외

□ 지원제한 예외 기업

- 지원신청기업의 부채비율이 업종별 제한부채비율을 초과하더라도 기술력과 사업성이 우수한 다음 기업에 대하여는 지원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
- 창업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
- 연간 매출액 중 수출비중이 25%이고 수출액이 1억원 이상인 중소기업

다. 지원내용

자금구분	지 원 내 용
시설투자 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의 창업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소요되는 다음 각호의 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중소기업의 공장 또는 사업장 건립에 소요되는 부지매입비 및 건축비 - 아파트형공장 등 임대공장 또는 사업장 임차보증금 - 기계기구 등 생산(서비스)시설의 신규구매·개채 및 기존 공장의 증·개축에 소요되는 자금 - 시장·전문상가·점포시설개선 및 전문상가·공동창고 건립자금
운전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쟁력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소요자금 ○ 시설투자와 관련하여 소요되는 연계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 등 기업경영을 위해 소요되는 운전자금

라. 용자조건 및 한도

- 용자금리 : 연 8.25%이내
(정부 재정자금 용자금리에 따라 변동)
- 용자기간
 - 시설투자자금 : 8년이내(거치기간3년 포함)
 - 운전자금 : 3년이내(거치기간 1년포함)
- 용자비율 : 소요자금의 100%이내
다만, 공장 또는 사업장 매입비(부지매입비 또는 임차보증금포함) 및 건축비는 소요자금의 75%이내
- 용자한도
 - 시설투자자금 : 8억원 이내(단, 특별지원지역 입주기업은 20억원 이내)
 - 운전자금 : 3억원 이내
- ※ 아파트형공장건설사업자, 유통업자, 조합·단체 및 공동사업추진업체에 대한 용자한도는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으로 증액 가능

마. 우선지원 대상기업

- 기술력이 인정되거나 기술개발 및 사업화에 주력하는 중소기업
 - NT, EM, GR, KT, GQ, 100PFM 민속공예품 품질인증, ISO9000/14000인증기업
 - 중소기업청 지정 기술경쟁력 우수기업
 - 중소기업청 지정 유망선진기술기업
 - 산·학·연 지역컨소시엄사업,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또는 기술 혁신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개발한 기술의 사업화를 추진하는 중소기업
 - 특허 또는 실용신안 취득기술 활용제품 생산기업
- 수출비중이 높거나 향후 수출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
 - 세계 일류화사업 및 수출기업화사업 참여기업
 - 수출비중이 총매출액의 20% 이상인 기업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장이 지정한 수출지원대상기업
- 여성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중소기업
-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월드컵관련 상품제조 중소기업
- 창업보육센터를 졸업한 중소기업
-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입주하는 중소기업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본사 또는 공장을 이전하는 중소기업
-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상의 소기업
-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입주하는 중소기업
- 중소기업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지역특화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국가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에 입주하는 중소기업
- 조직화·협업화, 공동화 및 정보화 추진업체

*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해서는 용자추천 심사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우대지원

바.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입주(예정)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 기존의 특별지원지역 지원사업비 조성액중 이월액은 창업 및 경쟁력강화 사업비로 통합운영
- 특별지원지역 입주기업 또는 분양(임대)계약을 체결한 입주예정기업이 용자신청시는 용자추천(승인)요건에 결격사유가 없는한 우선적으로 용자추천
 - 신청업체에 대한 심사평가 생략가능
 - 심사평가 실시시는 시·도지사가 정한 추천 최저기준 점수이상으로 평점된 경우 타 업체에 우선하여 추천

시장재개발사업

가. 지원대상

- 시장을 재개발·재건축, 증·개축 또는 이전하여 신축하는 사업자(무등록시장을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 점포로 재개발·재건축하는 경우에 한함)
- 중소백화점, 중소쇼핑센터를 재건축하거나 증·개축하는 사업자

나. 지원내용

-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과 그 부속시설에 대한 건축·기반공사비와 설비비 및 필요경비
 - 부속시설 : 주차장, 소비자 편의시설, 통로, 화장실 등
 - 설비비 : 전기, 기계설비, 상하수도 시설, 냉난방시설등 설치비
 - 필요경비 : 건물철거비, 이주비 등(총사업비의 30%이내에 한함)
- 임시시장 설치를 위한 부지 또는 기존 건물임차비

다. 용자조건 및 한도

- 용자금리 : 연리 8.25%
(정부 재정자금 용자금리에 따라 변동)
- 용자기간
 - 재개발·재건축사업비 : 15년이내(거치기간 5년포함)
 - 임시시장 설치비 : 8년이내(거치기간 3년포함)
- 용자비율 : 소요자금의 75%이내
- 용자한도 : 80억원 이내(단, 임시시장 설치비는 5억원 이내)
 - ※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으로 증액가능

라. 우선지원 대상

-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구역으로 선정된 시장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

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

가. 사업비 규모 : 당해년도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중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비 자체조성액의 20%이내

나. 사업계획 및 확정

- 시·도지사가 년초 또는 지원사업 필요시에 사업비 규모 (한도)를 감안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중소기업청의 사전 협의를 거쳐 확정
- 년초 자금지원 계획 수립이후 협의요청시는 지방중소기업 육성자금 사업전반에 사업계획 수정안을 포함하여 제출

다. 지원형태

지원형태	지 원 내 용
용 자	○ 기업 및 조합이 아닌 공공단체 또는 중소기업종업원 등에 대한 대출 -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중 금리, 기간, 시설 투자비의 용자조건을 기준으로 하되, 필요시 금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가능
지 출	○ 시·도지사가 직접 수행하는 중소기업지원사업비로서 집행
출연 또는 보조	○ 시·도지사가 민간단체에 위탁수행하는 중소기업지원사업비로 출연 또는 보조 ○ 중소기업지원기능을 수행하는 단체의 중소기업 지원사업비 또는 운영비로서 출연 또는 보조

라. 사업비 조성 및 부담

- 지역특화사업비는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의 창업 및 경쟁력 강화사업비 조성액으로 지원
 - 출연, 보조, 지출등 지원액 및 용자시에 금리감면에 따른 이차보전액은 시·도가 부담

4. 자금지원의 절차 및 방법

□ 동일기업에 대한 자금지원한도

-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의 연간 자금지원한도는 11억원 이내로 함
 - 동일기업이 다른목적으로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을 포함한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구조개선자금, 창업 지원자금, 농공단지 입주기업 지원자금 등을 지원 받을 경우 총 지원액이 40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용자추천일 현재 대출잔액기준)
- 지원한도의 예외
 -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입주(예정)기업
 -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자·지정체인사업자 및 아파트형 공장 건설 사업자
 - 개별기업이 조합·단체 또는 공동사업(협동화사업)의 구성원으로서 지원받은 금액(한도액 계산시 불포함)
 - 화재 또는 수해 등 재해기업

□ **용자추천 유효기간**

-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 : 용자추천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다만, 대출절차진행중이거나 지역특화사업등 공동추진 사업의 경우 시·도지사가 판단하여 적정기한 연장가능

- 시장재개발사업 및 아파트형공장건설사업 : 용자추천일로부터 2년 이내
 - 다만, 건축공정상 시·도지사가 기간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적정기간 연장가능

□ **세부절차 규정 자체제정 운용**

- 시·도별로 자금지원 대상업종, 지원기준, 지원대상업체 평가기준, 심사절차 및 지원신청 서식 등에 관한 자체규정을 제정시행

- 전면 개편된 자금지원제도의 2000. 1월 시행에 앞서 가급적 '99년중 자체규정을 전면정비

<붙임>

< 업종별 지원제한 부채비율표 >

업종(KSIC CODE)	제한부채비율(%)
이업(B)	1,010
광업(C)	1,010
석탄 광업(C10)	1,010
제조업(D)	669
음식료품(D15)	1,010
고기,과실,채소 및 유지가공업(D151)	1,010
낙농품(D152)	588
곡물가공품, 전분 및 사료(D153)	587
기타 식품(D154)	1,010
음료(D155)	1,010
섬유제품(D17)	612
방직, 직조 및 섬유가공업(D171)	486
기타 섬유제품(D172)	1,010
편조업(D173)	814
의복 및 모피제품(D18)	820
가죽, 가방, 마구류 및 신발(D19)	493
가죽, 가방 및 마구류(D191)	404
신발(D192)	533
목재 및 나무제품(가구 제외)(D20)	478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D21)	1,010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복제업(D22)	1,010
출판업 및 인쇄업(D221,2)	1,010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제조업(D23)	337
코크스 및 관련제품, 핵연료가공업(D231,3)	337
석유정제품(D232)	514
화합물 및 화학제품제조업(D24)	359
기초화합물(D241)	355
기타 화학제품(D242)	358
화학섬유(D243)	419

업 종(KSIC CODE)	제한부채비율(%)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D25)	340
고무제품(D251)	497
플라스틱제품(D252)	337
비금속광물제품(D26)	515
유리 및 유리제품(D261)	366
기타 비금속광물제품(D269)	546
제1차금속(D27)	647
제1차 철강(D271)	408
제1차 비철금속(D272)	913
금속주조업(D273)	1,010
조립금속제품(기계 및 장비제외)(D28)	1,010
구조금속제품, 탱크 및 증기발생기(D281)	577
기타 조립금속제품제조업 및 금속처리업(D289)	1,010
기타 기계 및 장비(D29)	627
일반목적용 기계(D291)	636
특수목적용 기계(D292)	590
기타 가정용기구(D293)	776
사무, 계산 및 회계용 기계(D30)	416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D31)	402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변환장치(D311)	337
전기공급 및 제어장치(D312)	337
절연선, 케이블 및 기타 전기장비(D313-5,9)	469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D32)	503
전자관 및 기타 전자부품(D321)	525
통신기기 및 방송장비(D322)	657
방송수신기 및 기타 영상음향기기(D323)	727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D33)	501
의료,측정,시험 및 기타정밀기기(D331)	435
사진 및 광학기기(D332)	745
시계 및 시계부품(D333)	337

업 종(KSIC CODE)	제한부채비율(%)
자동차 및 트레일러(D34)	761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D341)	1,010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D342)	1,010
자동차부품(D343)	723
기타 운송장비(D35)	570
선박,보트 건조 및 수리업(D351)	520
철도,항공기 및 기타 운송장비(D352-9)	772
가구 및 기타 제조업(D36)	1,010
가구(D361)	1,010
기타 제조업(D369)	1,010
전기, 가스, 수도사업(E)	
전기, 가스 및 증기업(E40)	344
전기업(E401)	350
가스 및 증기공급업(E402,3)	337
건설업(F)	
건설업(F45)	1,010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G)	801
자동차 판매,수리 및 차량연료소매업(G50)	651
도매 및 상품중개업(G51)	792
소매 및 소비자용품수선업(자동차 제외)(G52)	913
종합소매업(G521)	861
일반소매업(G522-6)	1,010
숙박 및 음식점업(H)	
숙박업(H551)	363

업 종(KSIC CODE)	제한부채비율(%)
운수, 창고 및 통신업(I)	648
육상운송업(I60)	508
수상운송업(I61)	1,010
항공운송업(I62)	1,010
여행알선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I63)	359
통신업(I64)	369
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K)	523
부동산업 및 임대업(K70,1)	553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용관련업(K72)	547
기타 사업관련서비스업(K74)	458
광고업(K743)	824
기타 사업관련 서비스업(K741,2,9)	377
기타 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O)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산업(O92)	337
영화,방송 및 기타 공연관련산업(O921)	337
운동,경기 및 기타 오락관련산업(O924)	1,010
전업종 평균	673